

설계자	확인자	설계년월일	2021.02. .
김대회	고준석		

방글라데시 메그나 교량사업 타당성조사

# 과업지시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# 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2
3. 과업내용.....	2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7
5. 과업수행 방법.....	10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11
7. 보안대책.....	12
II. 예정공정표.....	14

# I. 과업지시서

## 1. 개 요

□ 과업명 : 방글라데시 메그나 교량사업 타당성조사

### □ 과업목적

- 방글라데시 메그나 교량사업은 다카 시 중심에서 동측 직선거리 약 33km에 위치한 메그나(Meghna) 강을 횡단하는 4차선 2.75km 교량과 양측 접속도로 4차선 21.4km를 건설, 운영하는 민관협력(PPP) 사업임
  - 본 사업은 2020년 11월 ‘3차 한-방 Joint PPP Platform Meeting’을 통해 G2G Partnership 후보사업으로 등재되었으며, 발주처인 Bangladesh Bridge Authority가 2021년 2월부터 Commercial Feasibility Study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사업제안, 계약 협상 등 후속 절차를 실시할 계획임
- 이에 따라, 메그나 교량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, 기술 분석, 재무 분석, 법률 및 세무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요구되는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를 진단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세무 협의의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Construction of Bridge on Bhulta-Araihasar-Bancharampur Road over the River Meghna
- 위치 : 방글라데시 다카 동쪽 약 33 km 인근 메그나 강
  - Bhulta-Araihasar-Bancharampur Road (R-203) 구간
  - Dhaka Division과 Chittagong Division의 경계
- 발주처 : 방글라데시 교량청 (Bangladesh Bridge Authority, BBA)
  - Ministry of Road Transport and Bridges 산하기관
  - PPP 유관기관 : PPP청 (Public-Private Partnership Authority)
- 사업 범위 : 4차선 도로, Meghna Bridge 교량 2.7 km, 접속도로 21.4 km
  - 토지보상은 발주처 책임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80일

### 3. 과업내용

#### 1) 시장조사

##### □ 사업 환경 분석

- 사업 대상 국가 분석
- 유관기관 분석 및 PPP 추진절차
  - 방글라데시 유관기관 분석(BBA, PPPA, CCEA, MOF 등)  
CCEA: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Affairs  
MOF: Ministry of Finance
  - PPPA에서 주관하는 PPP사업 추진절차
  - G2G PPP 사업 추진절차 및 사례
- 유사사업 사례분석
  - 도로, 교량 등 인프라개발사업 사례분석  
(개요, 추진경과, 자금조달 방식 등)
  - 외국기업 단독개발, 외국기업과 로컬기업의 JV개발 등 사례분석
- 도로 인프라 분석 (교량 포함)
  - 사업 대상국의 도로 인프라 개발계획
  - 사업 대상지 주변의 도로 인프라 현황

#### 2) 발주처의 관련 용역 분석

##### □ 기존 관련 용역 결과

- 발주처의 Feasibility Study 보고서의 전반적인 검토
  - 문제점, 개선 또는 보완사항 등 분석
  - 주요 기술사항의 적정성 확인 (예: 노선계획)
  - 주요 관련 근거의 업데이트
- 보고서 구성
  - Main Report

- Hydrological Morphological and Mathematical Modelling Study
- Geotechnical Investigation
- Traffic Study
- Resettlement Action Plan
-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
- Technical Report
- Preliminary Design Drawings
- Land Acquisition Plan

□ 신규 관련 용역 협조 및 검토

- 발주처가 컨설턴트를 선정 예정인 Commercial Feasibility Study와 관련하여 필요시 협력을 제공하고 발주처 측과 협의 실시
  - 발주처의 Commercial Feasibility Study 중간, 최종 성과물 검토
- 발주처가 컨설턴트를 기 선정하 아래 용역의 대상사업 시행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분석
  - 용역명 : Feasibility Study for Construction of Bridges over the river Meghna on Shariatpur-Chandpur Road and Gazaria-Munshiganj Road and preparation of Master plan for Bangladesh Bridge Authority

3) 기술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□ 현황 조사

- 사업대상지 토지확보 방안 및 민원사항 검토
- 환경 및 기상조건 검토를 통한 공사 가능일 산정
- 사업대상지의 측량 및 지반조사를 통한 공사시행여건 검토
  - 측량조사: 노선 전구간 지형측량, 하천구간 수심측량
  - 지반조사: 하천구간 및 육상구간 시추조사를 통한 지반조사 수행  
하천 4공, 양안 교대부 각 1공, 총 6공 실시
  - ※ 기존 Feasibility Study에서 접속도로 구간 총 12공 실시
  - 하천 구간의 시추공의 심도는 기반암을 확인할 수 있는 깊이 또는 150m까지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할 수 있음

- 현지 기상조건, COVID-19로 인한 한국과 현지국 정부의 여행 자제 또는 금지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하여 현황 조사가 지체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의 현지 사무소/지사 활용, 현지업체와의 협력 등 실현성 있는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
  - 특히 중간보고 전까지 측량조사 및 지반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

#### □ 교량형식 분석 및 컨셉 설계

- 발주처의 Feasibility Study에서 제시한 3개 교량형식에 대한 장단점 분석
  - 시공성, 경제성, 경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ankable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산출되도록 최적안 도출
  - 각 비교안별 조감도 작성 : 3개안 x 2 컷 = 총 6 컷  
(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이미지)

구분	교량형식	주요 제원
1안	엑스트라도즈교	경간 구성 : 200m x 7 / 거더형식 : concrete box
2안	사장교 1	주경간 : 300m / 거더형식 : concrete box
3안	사장교 2	주경간 : 650m / 거더형식 : steel box

- 최적안에 대한 컨셉 설계 (도면 제작 및 주요물량 수량 산출)

#### □ 건설비용 산정

- 도로 설계, 건설 관련 현지기준 검토 및 관련자료 수집
- 현지업체(일반·전문 건설사) 현황파악 및 사업수행 가능 범위 검토
- 도로 선형, 지장물 유무 검토
- 공사비 산출 기초자료 수집(노무비, 자재비, 장비비 등)
- 사업 전 구간의 건설비용 산정(직접사업비+간접사업비+부대비)
  - 교량 구간(하천공 포함)과 접속도로 구간별 비교
- 시공성 검토 및 공사수행 여건을 고려한 예상 공정계획 작성

#### □ 운영비용 산정

- 발주처 운영비용 분석자료 및 관리기준 자료 수집
  - 교량·도로 유지보수 기준/주기 검토

- \* O&M매뉴얼, 유지관리 Performance Criteria 조사
- O&M 비용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(노무비, 자재비, 장비비 등)
- O&M 현지업체 현황 파악
- 계절별 유지관리 특이사항
- 유료도로 운영현황 조사, 관리체계 및 시스템 조사
  - 통행료 수납 및 교통관리 시스템 도입·운영 현황
  - 유료도로 재난, 긴급구난 시스템 현황
- 현지 여건을 고려한 운영비용 산정 및 사업주 협의(상시 및 정기보수비)

#### □ 교통수요 분석

- 교통 여건 조사 및 답사
  - 교통관련 현황파악 및 향후 전망자료  
(기존 도로망, 교통시설 계획, 인구, 차량 대수, 차종 등)
  - 현재 운행 중인 Ferry 요금 수준과 willingness to pay의 비교 검토
  - 방글라데시 유료 도로 및 교량의 통행료와 비교 검토
- 사업구간 장래 교통량의 적정여부 판단
  - 발주처 제시 교통량 자료 수집 및 장래 교통량 분석
  - 신규 교량 건설에 따른 효과 및 기초보고서 작성

#### □ 종합분석

- 접속도로 구간과 교량 구간의 PPP 사업성을 위한 최적안 도출

#### 4) 재무분야 사업타당성 분석

##### □ 현황 조사

- 대상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제지표 및 산업정책 등 자료 수집 및 분석
- 사업 대상국 PPP 사업 관련 사례조사
  - 재정지원금 지급방식 및 규모 적정성 분석, 미지급 사례, 지급기준 등
- 사업 대상국 내·외 금융기관 동향 파악

##### □ 자원조달

- 재원조달계획 수립
  - 현지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 조사
  - 방글라데시 투자사업에 대한 다자개발은행 (Multilateral Development Bank), Bilateral Development Bank, 인프라펀드, 한국수출입은행(EDPF, EDCF) 등의 정책 및 적용 가능성 조사
  - Viability Gap Financing (Capital Grant, BOT Annuity), 최소수입보장 (Minimum Revenue Gurantee), 최소교통량보장 (Minimum Traffic Gurantee), Availability Payment 적용 가능성 조사
  - 환율변동 및 환전 리스크 헷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
  - 사업 대상국 외환 자금 입출금 관련제도 및 제한사항 조사

#### □ 재무적 타당성 분석

- 재무모델 작성
  - 사업의 주요 가정사항(물가상승률, 이자율, 환율) 및 현지 법인세, 부가세 등 주요 세제 반영된 재무모델 분석
- 경제성 및 재무 분석
  - 수익성지표 분석(NPV, ROE, ROI, 회수기간 등)
  - VGF 방식 및 비율, MRG, MTG, AP 방식에 따른 사업의 재무타당성 (민감도) 분석
  - 시나리오 중에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DCF와 같은 차관을 활용하여 사업구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
    - ① PPP 사업 구간 : 교량(2.7km)
    - ② 차관·재정사업 구간 : 접속도로(21.4km)

#### □ 사업위험 분석 (Risk Analysis)

- 현지 리스크 조사 및 위험에 따른 리스크 헷지방안
  - 물가변동, 이자율변동, 운영·유지관리 위험, 정치·불가항력 위험 등
-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
  - 차입방식, 차입조건 상세화
  - 자금조달 시나리오 분석(재원조달 구조 변경, 재원별: 외국자본, 국내자본 등)
  -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(사업비, 운영비, 이자율, 환율, 통행요금 등)



-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방글라데시 현지 사무소 및 지점 등을 보유한 업체와 협업하여 재무분야 사업타당성 분석 수행

## 5) 법률 검토

### □ 인프라 투자사업 환경 조사

- 기존 인프라 투자사업의 양허계약(부속서류 포함) 등 주요 계약 적정성 검토 및 법률적 위험요인 도출·분석
  - 불가항력 사안의 처리, 해지시 지급금 등 위험의 분담
- 정치적 위험, 계약불이행 등과 관련된 보험(국제기구 보증 포함) 검토
- 외국기업 SPC 및 O&M 법인 설립·운영사례 조사
- Availability Payment 방식의 도입 및 적용 가능성 검토
  - 기존에 Availability Payment 방식이 시도되었던 인프라 투자사업 사례 또는 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사
  - 특히 RHD가 추진한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내용과 발주처(RHD), 관계기관(PPPA, MOF), 자문사(ADB)의 입장 조사
  - 본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

### □ 선행 조사의 반영

- 우리 공사가 법률과 관련된 선행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종 보고서 및 발표자료에 반영하여야 함

## 4. 과업의 일반원칙

### 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## 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## 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## 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#### 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  
※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#### □ 성과물 작성

- 최종보고서 및 발표자료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 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<사업주 수행> 과업(해당 시)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함

※ <사업주 수행>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수행

#### 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### 5. 과업수행 방법

#### 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전, 최종보고서 제출 전 등 2회 이상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#### 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
(사업주와 협의하여 3월말 추진)
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#### 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

### 6. 과업성과품 제출

#### 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#### 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 - 특히 측량조사와 지반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교량 형식의 비교검토안이 완료되어야 함
 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- 발주처와 협의를 위해 기술분야 책임자는 현지 회의(워크숍 등) 참여

#### 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- 발주처와 협의를 위해 재무분야 책임자는 현지 회의(워크숍 등) 참여

#### 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### 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(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## II. 예정공정표

항목		1개월	2개월	3개월	4개월	5개월	6개월	비고
1. 시장 조사		■						
2. 기술 분석		■						
3. 재무 분석		■						
4. 법률 검토		■						
5.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				■				
6. 성과품 작성						■		
보고회		착수보고			중간보고		최종보고	
과업진도율	당기	15	25	20	20	15	5	
	누적	15	40	60	80	95	100	

- 1개월차에 현지조사 (3월말 예상)
- 중간보고 시 발주처 워크숍 예정 (기술분야 책임자 참석)
- 최종보고 시 발주처 워크숍 예정 (재무분야 책임자 참석)